

「남해군 청사신축 설계공모 2단계」 질의답변서

1. A 업체

번호	지침서 (page)	질의 및 답변
1	p46 Ⅲ.1.라.3)	<p>질의)</p> <p>“모형의 재질은 임의로 선택하되 색상은 백색으로 하며, 건축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건물과 계획안의 건물 표현은 백색으로 하되, 대상지 내부의 조경에 한하여 색상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모형의 바닥면에 도로 및 주변현황을 표현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대상지 바닥에 흑백 배치도를 출력하여 붙임] <p>답변) 모형에 표현되는 조경계획과 바닥면에 표현되는 도로 및 주변현황은 백색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p>

2. B업 체

번호	지침서 (page)	질의 및 답변
1	p1 I.3	<p>질의) 일반적으로 각종 인증에 대한 용역 업무의 비용 외에 인증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인지 업무수행자 부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p> <p>답변) 본 설계공모의 추정 설계비는 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BF인증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며, 수수료의 증액 또는 추가발생 되는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시 추정 설계비에 계상된 BF인증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으로 계약 체결할 경우 각종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p>
2	p12 I.14.라.11)	<p>질의) 설계공모의 실격사항 중 11)항목의 '1단계 제출 작품의 개념, 방향성 등에 대한 유지'의 경우 현장설명회 당시 기존 의회 및 청사의 일부를 철거 가능한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이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작품을 실격 처리한다.'라는 내용은 대치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회의 판단 없이 1단계 제출과 다른 개념과 방향성이어도 무방할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1차 제출한 것보다 준비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개념과 방향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개념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진행하고, 1차와 달라지는 범위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p> <p>답변) 설계공모 2단계에서 p26의 II.Ⅲ.설계방향 세부지침 1. 배치 및 교통계획에 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2단계 심사 대상작 중 1단계 설계공모 당선작의 경우, 1단계에서 제출한 작품의 개념과 방향성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3	p13 I.16.가.2)	<p>질의) 저작권과 출판권 가. 일반사항 2) '입상작에 대한 후속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기관이 가지는 항목은 당선작에 입상작의 아이디어를 첨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임.</p> <p>답변) p13의 16. 저작권과 출판권 가. 일반사항 2)는 발주기관이 후속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입상작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첨가 및 변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그에 관한 사항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p>

번호	지침서 (page)	질 의 및 답 변
4	p14 I.17.가.7)	<p>질의) 입상 이후 조건 가. 일반사항 7)/p15. 18. 계약 가.일반사항 4) ‘각종 영향평가 등 일체 행정사항에 관한 모든 과정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서, 설계 계약은 발주자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에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설계비는 설계비 산출서에 포함되어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체결은 추정설계비와 상이한 내용으로 설계비에 대한 당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답변) 본 설계공모 관련 설계내역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가 설계업무에 해당하거나 조정이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당선자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p>
5	p27 II.Ⅲ.1.타. II.Ⅲ.1.거.	<p>질의) 거. ‘차로는 최소 7m를 확보’는 지하주차장 차로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타.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5m 이상 확보’한다를 ‘2개층이 가능하도록 한다’로 수정 요청합니다.</p> <p>답변) II.Ⅲ.1.타. ‘지하주차장은 추후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2개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층고를 5미터 이상 확보한다.’에서 ‘지하주차장은 추후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2개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층고를 확보한다.’로 변경합니다. II.Ⅲ.1.거. 차로폭 7m는 지상 차량의 통행 등 교통계획 시 적용하며, 지하주차장의 차로폭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획하시면 됩니다.</p>
6	p27 II.Ⅲ.1.너.	<p>질의) 주차장의 이용자별의 구분에서 공무원과 방문자의 요구대수 또는 비율이 있는가?</p> <p>답변) 주차구역에 대한 이용자별 요구대수 또는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1년 실시한 신청사에 대한 주차수요 조사 결과, 전체 수요는 371대로 직원 176대, 공용차량 95대, 민원차량 100대의 요구가 있었으며, 설계지침서에는 직원·공용차량은 수요의 50퍼센트 반영, 민원차량은 100퍼센트를 반영한 것으로 총 236대 이상의 계획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p>

번호	지침서 (page)	질의 및 답변
7	p27 II.Ⅲ.1.러.	<p>질의) 러. 신청사가 건립되는 동안 기존 지상주차장의 사용에 관련하여 의회 및 민원실의 철거 가능여부가 부각됨으로 인해 전면의 주차장 또한 공사기간 중의 존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주변에 주차장을 대체할 부지가 많이 있으므로 설계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p> <p>답변) p26의 II.Ⅲ.설계방향 세부지침 1. 배치 및 교통계획의 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서 설계자는 지상주차장 일부를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p>
8	p45. Ⅲ.1.나 p46. Ⅲ.1.다	<p>질의) 설계도판은 'A1크기 6매 1식', 설계설명/도면집(A3), 모형(A1) 등 현상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며, 참가 초청비에 비해서 제출물은 부담이 되는 상태이므로 제출물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함. 수정 제안의 내용은 도판은 4매 정도로 축소하고 설계설명/도면집은 분량 축소하여 건축계획의 내용외의 기술계획에 대한 내용 삭제하고 모형은 스터디 모형 수준 또는 모형을 삭제해서(만약 작품심사 후 전시를 위한 모형이 필요할 시에는 입상작에 한해서 추가 모형을 제작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판단됨) 과도한 비용이 발생과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고, 좋은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p> <p>답변) 설계도판, 설계설명·도면집, 모형 등의 제출물은 지명공모를 실시한 타 설계공모 사례를 비교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지침의 내용대로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설계설명·도면집은 25페이지 이내로서 최소분량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Ⅲ.1.다의 6)과 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모형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제출물로서 불필요한 색상은 제한하여 백색으로 통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9	p47.Ⅲ.1.	<p>질의) 발표의 영상자료에 담기는 내용 또한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에 수록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 바랍니다.</p> <p>답변) 영상자료는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에 수록된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및 도면 작성을 위하여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효과 등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별도의 영상 제작은 사양합니다.</p>

3. C 업 체

번호	지침서 (page)	질 의 및 답 변
1	p33 II.IV.1.가 p1. I.3.	<p>질의) 가. 연면적과 각 구분별 세부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구분별 세부면적이란 청사/의회/주민편의 영역별 소계의 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p> <p>답변) 구분별 세부면적은 II.IV.1.라. 신청사 전체 건축 연면적(안)의 각 구분별[1)청사-군청사, 법정시설 등, 지하주차장, 2)의회-군의회, 3)주민편의-주민편의] 면적입니다. 다만, 설계 개념 상 필요한 경우에는 p1의 I.3. 설계공모 개요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연면적인 22,806.48㎡에서 ±5% 이내의 조정 범위를 충족하시면 됩니다.</p>
2	p46 III.1.다.6) III.1.다.8)	<p>질의) 다. 설계설명·도면집에서 6)과 8)의 순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p> <p>답변) 다. 설계설명·도면집은 6)과 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합니다.</p>
3	p47 III.1.마.2) III.1.바.3) p7 III.1.마.2)	<p>질의) 2) 발표자료는 PDF, PPT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며,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수록된 내용만을 편집하여 사용한다. → p7의 제출물 목록표의 발표자료 USB저장소 파일명은 PIN 번호_present.pdf로 되어있는데, 발표자료의 형식 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한 PDF로 제출해야 할 경우, 영상자료는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영상자료 사용 시,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수록된 내용물에서 표현만 가능한 것인지(ex. 화살표, 애니메이션 효과 등), 새롭게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ex. 공간으로 진입하는 시퀀스 동영상) 질의합니다.</p> <p>답변) 영상자료는 PPT, PDF 등 형식의 발표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파일명은 파일 형식에 따라 PIN 번호_present.mp4 또는 PIN 번호_present.avi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는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에 수록된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및 도면 작성을 위하여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효과 등 사용할 수 있으며,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작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새롭게 제작한 영상은 지양합니다.</p>

번호	지침서 (page)	질의 및 답변
4	p47 Ⅲ.1.바.3)	<p>질의)</p> <p>3) 설계도판은 JPG파일로, 설계설명·도면집은 PDF파일(계획도는 DWG파일)로 제출하며~</p> <p>계획도는 p.7 제출물 목록표에 없는데, 추가로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만약 제출하게 될 시, 계획도란 무엇을 뜻하며, USB저장소 파일명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p> <hr/> <p>답변) 계획도는 설계도판과 설계설명·도면집의 작성에 사용한 도면 일체를 뜻합니다.</p> <p>따라서 USB저장소 자료는 설계도판과 설계설명·도면집의 작성에 사용한 그림파일과 도면 일체 및 p.7의 제출물 목록표에 있는 문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p> <p>USB저장소 파일명은 PIN 번호_도면명칭.dwg로 하시면 됩니다.</p>

4. D 업 체

번호	지침서 (page)	질의 및 답변
1	기타	<p>질의) 대지 전체 지형의 레벨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현황측량도 공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p> <p>답변) 사업 대상지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질의 접수한 메일로 일괄 발송 하여 드렸습니다.</p>
2	기타	<p>질의)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성의 도면(평면, 단면) 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p> <p>답변)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성의 도면(평면, 단면)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성은 지침서 별첨자료2와 같이 북측과 남측 두 군데가 있으며, 북측 음성 중 일부인 서변리 24-6번지는 '2014년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음성 서벽과 치의 기저부가 발굴되었는데 서벽(체성)은 높이 3.3m 정도가 남아있으며, 지표에서 확인되는 서벽(체성)의 폭은 약 5m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질의응답서 첨부 자료(남해읍 서변리 24-6-26-6번지 발굴조사 보고서, p401 참고)로 질의 접수한 메일로 일괄 발송하였으며, 북측 음성의 잔존길이는 지침서 별첨자료2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측에 확인되는 음성은 지침서 별첨자료5의 p30에 '2트렌치에 ~ 추정되는 성벽(잔존길이 12.5m, 높이 1.7m 내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길이와 너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배부해드린 현장설명회 자료 p31의 서벽 체성과 치 잔존상태 사진 설명은 '서변리 25-4번지'에서 '서변리 24-6번지'로 정정합니다.</p>
3	p10 I.1.14.나.	<p>질의) 발표자료 중 설계 설명 영상은 발표자료와 작품자료를 동일한 날에 제출하기 때문에 지침서에 명기된 대로 작품 특징 및 설계 의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되, 기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p> <p>답변) 설계설명 영상은 설계도판과 설계설명서에 수록된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및 도면 작성을 위한 작업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효과 등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별도의 영상 제작 작업은 사양합니다.</p>

5. F업 체

번호	지침서 (page)	질의 및 답변
1	기타	<p>질의) 대상지 대지 레벨 및 음성의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측량도 제공이 가능한지</p> <hr/> <p>답변) 사업 대상지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은 질의 접수한 메일로 일괄 발송하여 드렸으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성의 위치와 길이에 관한 내용은 지침서 별첨 자료2의 남해읍성 일원 조사현황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설계 작업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잔존하고 있는 음성의 현황측량도는 빠른 시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p>